

식민지 조선 평양의 배화폭동(排華暴動)과 중국의 대응*

이은상**

-
- I. 서론
 - II. 사건 경위 조사
 - III. 피해조사표 작성
 - IV. 구휼금 지급
 - V. 결론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 평양에서 발생한 배화폭동의 실태를 중국의 사후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평양화교의 보호 책임을 맡고 있는 주조선영사관(駐朝鮮領事館, 진남포 분관), 실무를 담당한 평양 중화상회, 그리고 국민당 주조선 직속지부(駐朝鮮直屬支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우선, 중국이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1, 2차 조사단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연구활성화 지원사업(202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李殷祥,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e-mail: eunha@pusan.ac.kr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1년 7월 5일 저녁 7시부터 발생한 폭동은 매우 격렬하고 조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경의 제지가 없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평양에서 참극이 발생할 때 진남포 분관 수습영사 서원달(徐源達)은 부재하였다. 평양 사상자 통계는 확정되지 않았고 일본 곧, 조선총독부 공식 통계와도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최종 피해조사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재난 화교 구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평양 중화상회였다. 여기에 경성의 직속지부에서 특파된 인원이 사후 처리 과정에 협조하였다. 진남포 분관은 중화상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인적, 물적 피해조사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구휼금 지급 상황을 살펴보았다. 구휼금 지급은 영사관, 국민당 주조선 직속지부, 평양 중화상회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다. 그 중 외교부, 진무위원회(賑務委員會), 요녕(遼寧) 각 법단(法團)이 제공한 구휼금은 각각 사망자의 77%, 중상자의 53%에게 지급되었다. 장주석(蔣主席) 구휼금은 사망자의 74%에게 분배되었지만 중상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유족이 귀국했을 경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구휼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았기에,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미지급 구휼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되었다.

주제어 : 평양 배화폭동, 평양 중화상회, 주조선영사관, 국민당 주조선 직속지부, 구휼금

■ Abstract

China's Response after the Anti-Chinese Riots in Pyongyang, Colonial Korea

LEE Eunsang

(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lity of the Anti-Chinese Riots of 1931 in Pyongyang, Colonial Korea, focusing on the China's post-riots response. I specifically focused on the roles of the Chinese Consulate,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Overseas Chinese, the Chamber of Commerce in Pyongyang, and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Kuomintang) branch in Keijo.

Firstly, I reviewed the progress and the extent of damage of the Pyongyang incident, focusing on the reports of the first and second Chinese investigative teams.

Secondly, I described the process of compiling statistics o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by the Chinese side. The Chamber of Commerce played an important role. Additionally, one member was dispatched from KMT branch in Keijo to collaborate with that organization.

Lastly, I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relief funds collected by various organizations. The distribution was carried out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ree entities: the Consulate, the KMT, and the Chamber of Commerce. The relief fund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China etc., were distributed to approximately 77% of the

deceased and 53% of the injured in Pyongyang. On the other hand, the relief funds provided by President Zhang were only distributed to 74% of the deceased and were not distributed to the injured. Consequently, the question of how to handle the remaining relief funds emerged as another issue.

key word : Anti-Chinese Riots in Pyongyang,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Pyongyang, Chinese Consulate in Colonial Korea, Chinese Nationalist Party branch in Keijo, Relief Funds

I. 서론

20세기 전반 한국화교사에서 획기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은 배화폭동이 다. 1931년 7월 식민지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이 폭동으로 평양화교의 인적, 물질 피해가 가장 심각하였다. 이에 폭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평양이다(임준규 2018, 4-15).

폭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폭동의 양상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장세운 2003, 189-234; 이정희·송승석 2015, 199-211; 이은상 2016a, 68-75); 이은상 2016b, 91-117; 이은상 2024, 138-146). 평양의 피해는 다른 지역을 압도하기에 그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지역별 양상뿐 아니라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평양 폭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정희(李正熙 2012)는 평양 ‘사건’을 중심으로 배화 사건의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을 다룬 연구에서, 근인으로 평안남도 당국의 사건 대응의 문제점, 유언비어의 영향, 원인으로 조선인 노동자와 화교노동자, 조선인 상인과 화교상인의 대립을 지적하였다. 그는 중국 자료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내부 문서, 치안 책임자의 일기 및 회고록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평양 폭동이 발생한 연유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정병욱(2019)은 배화폭동의 학살 현장과 요인을 검토한 논문에서 대만 국사관(國史館)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평양과 그 부근의 사망자 정보 통계표를 분석하였다. 평양 폭동의 최종 사망자 통계표를 발굴하여 분석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방대한 국사관 소장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기에 최종 사망자 통계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에 관한 서술이 빠져있음은 아쉽다.

박홍우(2017)는 배화폭동과 평양 화교사회를 다룬 논문에서, 남경국민정부 수립 이후 평양 화교사회가 친(親)국민당적 세력, 친일적 세력으로

양분되어 갈등이 심화되었음에 주목하였다. 그의 연구는 당시 평양 중화상회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일부 신문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의 공식 문건을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임준규(2018)는 평양 사건은 중국인에 대한 구타와 방화를 넘어 학살 형태의 폭동으로 전화가 일어났고, 그 결정적 이유는 평양 당국의 방관적 태도, 유언비어의 성격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의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평양 폭동을 ‘학살’로 규정함으로써 그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은상(2022)은 배화폭동 이전 평양화교의 직업별 현황과 경제력, 조직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폭동 이후 평양 중화상회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준다. 당시 영국인과 미국인 합작회사인 태안양행(泰安洋行)이 폭동으로 손실을 입었기에, 그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과 일본이 주고받은 문서가 남아있다. 강진아(2021)는 이 영국 외무성 문서를 발굴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평양 폭동을 재구성하였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 성과의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평양 폭동의 실태를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아닌, 중국의 사후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기존에 남경국민정부, 국민당 혹은 동북(東北) 지방 정부의 대응 등을 분석한 연구성과는 있지만(菊池一隆 2007, 30-58; 石建國 2012, 56-66; 손승희 2007, 110-124), 화교 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조선영사관, 중화상회 등의 역할에 관한 본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폭동 발발 이후 중화상회, 주로 경성 중화상회의 대응과 역할에 초점을 맞춘 평귀린(馮國林 2021)의 연구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필자 역시 중화상회의 역할에 주목하는 바, 평귀린의 문제의식과 동일하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평양화교의 보호 책임을 맡고 있는 주조선영사관(진남포 분관), 실무를 담당한 중화상회, 국민당 주조선 직속지부(駐朝鮮直屬支部)의 역할에 주목하여, 사건 경위 조사와 최종 피해조사표 작성

과정, 구휼금 지급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피해 화교 보호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II. 사건 경위 조사

중국은 평양 폭동의 경과와 피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중국의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조사단 파견은 두 차례 이루어졌다.

평양 폭동이 거의 수습 단계로 들어선 7월 8일 주조선총영사 장유성(張維城)은 주사 이중강(李仲剛)을 평양에 파견하였다. 국민당 주조선 직속 지부 집행위원 정유분(鄭維芬), 경성 중화상회 대표 필한서(畢翰序)도 동행하였다. 제1차 조사단의 보고서(“평양 피난 교포 위문과 조선인 폭동 정황 조사보고”)는 7월 10일 자로 작성되었는데 작성자는 이중강, 정유분, 필한서 등 3인이었다. 이중강 등은 기차로 7월 8일 평양역에 도착하여 일본 관계자와 같이 피난 화교 수용소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중화상회, 국민당부 임원 등과 면담을 하였다.

중화상회 회장 맹헌시(孟憲時) 등에 따르면, 사전에 조선인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평양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그런데 다수의 조선 청년이 대거 폭동을 일으켜 지나가는 중국인을 살상, 구타하고 가옥, 상점을 훼손, 약탈, 방화하였으며, 명령을 내리는 자가 큰 소리로 중국인을 죽이자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일경은 간섭하지 않았다. 이에 이중강은 이번 계획적인 ‘대참살안’에 대해 중국은 그 책임을 ‘망국의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에 묻겠다고 하였다.¹⁾

1)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7월 11일 “朝鮮暴動排華” 10(020-990600-3017),

다음으로 외교부는 (7월 9일자 전보에서) 주일공사 왕영보(汪榮寶)에게 사건의 경위 조사와 경사(京師. 남경) 행을 명하였다. 왕영보는 도교를 출발하여 고베를 거쳐 고베영사 임가풍(任家豐)을 수행원으로 대동하고 조선에 도착한 뒤, 부산, 경성, 평양, 진남포, 인천, 신의주 등지를 방문하여 정황을 파악하였다. 조선을 떠나 동북(東北), 북평, 상해를 거쳐 8월 6일 남경에 도착한 뒤 바로 외교부에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정황에 대해 평양이 가장 엄중하고, 인천이 그다음이며, 그 나머지 각지의 방법은 비교적 일찍 이루어져 거변(巨變)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각지 상황을 보고하였다.²⁾

주일공사가 참여한 이 제2차 조사단의 보고서에는 평양 폭동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담겨있다. 왕영보는 7월 16일 경성에 도착하여 당일 저녁 기차를 타고 18일 아침 평양에 도착하였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가 주목된다.

우선, 이 보고서에서는 7월 5일 저녁 7시를 폭동 발생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당시 신문 기사, 일본의 공식 문건 등에 따르면 이미 4일부터 평양에도 전조 현상이 있었지만(조선일보 1931.7.6; 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5-6),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5일 첫날부터 폭동은 조직적이었고 일경의 제지가 없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상황 인식은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진남포 분관 수습영사 서원달(徐源達)의 행보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 ‘참극’이 발생한 다음 날 6일 아침 서원달은 기차를 타고 평양역으로 갔으나, 현재 교민은 수용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형세가

7-16.

2) 주일공사 汪榮寶→외교부, 민국 20년 8월 6일, “朝鮮暴動排華” 5(020-990600-3012), 35-50.

안정되었다는 일본인 역장과 도청 직원의 말을 듣고, 다시 진남포로 돌아갔다. 진남포에서는 이 날(6일) 오후 2시에 폭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민은 수용되고 무장경찰은 폭도를 해산시킴으로써 평양에서와 같은 참극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서원달의 행보를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평양 참극이 일어난 다음 날 평양역까지 왔다가 다시 진남포로 돌아간 그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남포의 상황이 위급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을까. 진남포의 인적, 물적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이은상 2024, 140-142), 평양의 참극과는 대비되었다.

평양 참극은 첫날 5일과 둘째 날 6일에 집중되었다. 참극이 발생할 때 현장에 중국영사관원은 부재했다. 서원달이 다시 평양을 방문한 시점은 제1차 조사단이 파견된 8일이었다. 사실 폭동 직전 진남포 분관의 운영은 재정적으로 거의 파산에 이르렀다(이은상 2023, 268-273). 이러한 상황에서 수습영사 신분의 서원달이 평양 폭동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화교의 입장에서 서원달의 행보는 용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장유성은 7월 28일 자 조선총독부 외사과에 보낸 문건에서 외교부의 명에 따라 서원달에게 부영사 함(銜)을 더한다고 알렸다.³⁾ 이는 폭동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노고를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외교부는 관내 화교가 다수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돌연 8월 26일 자로 서원달을 면직한다는 전보를 총영사관에 보냈다.⁴⁾ 그 연유는 평양 중화상회의 불만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화상회에서 진남포 분관의 대응 조치에 불만을

3)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사과장, 민국 20년 7월 28일, “在京城中華民國副領事季達及在鎮南浦中華民國修習領事徐源達ノ榮進ニ關スル件”, “各國領事館往復—中華民國領事館”(CJA0002323), 371-375.

4) 외교부→주조선총영사관, 민국 20년 8월 26일, “民國二十年: 人事—鎮南浦分館人事”(03-47-207-10), “駐朝鮮使館檔”, 92-93. 이하 “駐朝鮮使館檔”은 생략함.

품고 평양에 영사관 설치를 요청했다는 일본의 보고서 내용은 흥미롭다.⁵⁾ 필자가 파악하는 한 평양화교가 평양에 영사관 설치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은 이 자료에서 처음 확인된다.

세 번째로, 평양 폭동 당시 화교단체 임원을 파악할 수 있다. 왕영보는 피난 화교를 위로하고 사망 화교에게 조의를 표한 후에 훼손된 상점을 순시하고 나서 이들과 회동하였다. 여기에는 중화상회 대표 맹헌시, 왕자신(王紫宸), 장경현(張景賢), 허유민(許維敏), 중화요리동업공회 대표 왕택국(王澤國), 중화농회 대표 유문치(劉文治)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평양 사상자 통계를 사망자 109명, 부상자 163명, 생사불명자 63명으로 기재하였다. 평양의 사상자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다음 장에서 중국의 최종 피해조사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III. 피해조사표 작성

폭동이 발생하자 주조선영사관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앞서 제1차 조사단에 국민당 직속지부 집행위원 정유분이 동행했음은 서술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성에 직속지부가 설립된 것은 1927년이고, 정식으로 직속지부로 인정을 받아 ‘국민당 주조선 직속지부’의 명칭이 사용된 시점은 1929년이다. 평양에는 1931년 1월 당원 수 80명으로 분부(分部)가 조직되었다(李正熙 2010, 97-101). 1927년 창립대회에서 경성지부장이자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장홍해(張鴻海)는 1929년 중화상회 상무위원으로 상홍호

5) 평안남도지사→경무국장 등, 소화 6년 9월 16일, “副領事引揚ニ關スル件”, “各國領事館往復—中華民國領事館”, 394-396; 강진아 2012, 286-288.

(祥興號, 洋服莊業)를 경영하였다. 또 다른 집행위원 정유분은 중화상회 통역으로 사해루(四海樓, 요리업)를 경영하였다.⁶⁾ 1930년 4월에는 주조선 직속지부 기념식을 사해루에서 거행하였는데, 이 시점 지부장은 정유분이었기에(중외일보 1930.4.17), 제1차 조사단에는 정유분이 참여하였다.

그러면 평양 본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다음 몇 건의 신문 기사를 통해 단편적이거나 추정해 보자. 우선, 1928년 6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평양 중화상회가 주최가 되어 단오일에 상회 사무소에서 청천백일기 게양식을 거행하였는데, 모인 사람은 약 60여 명으로 각 상회 대표자와 소학교 학생이었다. 여기서 상회 회장 왕수정(王壽廷)의 중국 정국에 관한 강설(講說), 소학교 교장 곽곤(郭鯤)의 삼민주의에 대한 연설이 있었다(중외일보 1928.6.24).

다음으로, 1929년 9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상회 내 분규가 일어나 금일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 원인은 상회 회장 왕옥(王鈺)과 통역 요춘덕(姚春德) 사이에 손중산위령제(孫中山慰靈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왕옥이 요춘덕을 사면(辭免)시켰기 때문이다. 동일한 날짜의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화교소학교에서 분규가 일어나 동일 교명을 가진 학교가 양 곳에 분립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교원 곽곤과 상회 통역 요춘덕이 회장 왕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손중산위령제를 거행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조선일보 1929.9.5).

마지막으로 1931년 7월 9일자 기사에서는 국민당 평양지부장 담화가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의 화상총상회는 피난민 수용 장소에 한 칸을 내어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를 진행하였다. 여기로 국민당 주조선 직속지부 평양 직속 제4구 본부 상무 집행위원 요춘덕 씨를 방문하였다. 요춘덕 씨는 군중의 습격을 받아 원편 대퇴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책임감이 강한 그는 입원도 하지 않고 그대로

6) 주조선총영사관→외교부, 공상부, 민국 18년 8월 31일, “朝鮮京城中華總商會職員表”, “民國十八年: 商務—商會職員改善”(03-47-178-03), 6-8.

천막 속에 앉아서 5천 명 피난민을 돌보고 있다”(동아일보 1931.7.9).

지금까지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평양 분부 지부장이자 상무집행위원은 요춘덕이다. 그는 1929년 중화상회 통역으로 손중산위령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당시 회장 왕옥과 대립하였다. 또한 화교소학교 교장 곽곤도 평양 분부 임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폭동 발생 이후 피난 화교가 쓴 기록에 의하면, 평양은 중화상회 건물 안에 당부(黨部)가 설치되었는데 폭동으로 사무실이 전부 불타버리고 총리 유상(遺像), 당기(黨旗) 등은 훼손되었다(遼寧省檔案館·吉林省檔案館·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合編 1991, 202-204). 평양 분부의 대표 요춘덕은 중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폭동으로 평양 분부 조직은 와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평양 중화상회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주일공사 왕영보의 평양행에는 총영사 장유성도 동행하였다. 이에 장유성은 왕영보와는 별도로 외교부에 실지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⁷⁾ 장유성의 실지조사 기록과 왕영보의 보고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조사단이 면담한 평양 화교단체 임원으로 왕영보의 보고서에 언급된 인원 외에, 허단신(許丹臣), 요춘덕, 왕옥 등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유성은 8월 1일자로 외교부에 문건을 보내, 폭동 이후 재난 화교 구제를 위해 노력한 인원을 장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문건에서 “한성, 인천, 진남포, 평양 등지 임시판리구제인원(臨時辦理救濟人員) 성명, 약력 표”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중화상회, 중화농회 임원 혹은 소학교 교원 등이고, 직속 지부 인원으로 집행위원 정유분, 감찰위원 장우방(張友芳), 위원 주조고(周照高) 등 3명도 포함되었다.⁸⁾ 이 중 평양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7월 28일, 革命文獻 33, 684-687.

8)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8월 1일, “한성, 인천, 진남포, 평양 등지 臨時辦理救濟人員 성명, 약력 표”, “朝鮮暴動排華” 3(020-990600-3010), 66-71.

〈표 1〉 평양의 임시판리구제인원(臨時辦理救濟人員) 성명, 약력 표(1931.8)

성명	이력	비고
		중화상회 직위(1930.02)/ 상호(업종)
孟憲時	화상상회 주석	주석/ 慶興德(잡화)
張景賢	화상상회 상무위원	상무집행위원/ 春盛永(직물)
劉子平	화상상회 상무위원	상무집행위원/ 永興德(잡화)
劉文治	중화농회 회장	
劉聿軒	화상상회 상무위원	상무집행위원/ 春盛興(직물, 소맥 제조)
許維敏	화상상회 위원	상무감찰위원/ 東興德(잡화)
王紫宸	僑商 副經理	
王澤國	교상 經理	요리동업공회 대표(前述)
劉笑溪	교상 경리	
王永全	교상 경리	
阮孝侯	화상상회 서기	
羅正家	화상상회 통역	
劉滙川	교상 부경리	
姜菊	교상 부경리	

〈출처〉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8월 1일, “한성, 인천, 진남포, 평양 등지 臨時辦理救濟人員 성명, 약력 표”, “朝鮮暴動排華” 3, 66-71.

〈비고〉 중화상회 임원 직위와 업종은 다음을 참고함(이은상 2022, 89-90).

〈표 1〉에 언급된 14명은 중화상회 혹은 중화농회 임원 그리고 기타 화교 상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조사단이 면담한 단체 임원 명단과 비교해 보면 맹헌시, 장경현, 유문치, 왕자신, 왕택국, 허유민 등 6명은 중복되고, 상무집행위원 유자평(劉子平), 상무위원 유율현(劉聿軒), 서기 완효후(阮孝侯), 통역 나정가(羅正家) 외 화교상인으로 유소계(劉笑溪), 왕영전(王永全), 유희천(劉滙川), 강국(姜菊) 등이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국민당 직속지부(평양 분부), 평양 중화상회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피해 조사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점별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우선, 사상자 통계표는 1931년 8월 16일자 장유성이 외교부에 보낸 문건에 처음 보인다.⁹⁾ 그 중 “주조선총영사관이 조사한 조선 참안(慘案) 사상인수(死傷人數) 통계”에서는 전 지역의 사상자 수를 사망지점, 소속 영사관, 남녀 수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평양 사망자는 126명(남 109, 여 9, 아동 8), 중상자는 74명(남 62, 여 12)으로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인 학살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사망, 중상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이 총괄표 뒤에는 구체적으로 “경성, 진남포, 평양 화교 사망, 피구인수(被毆人數) 통계”를 제시하였다. 그 중 “평양 화교 사망과 수상(受傷), 손실 통계”에서는 평양과 인근 지방의 사망자를 109명, 수상자 곧, 중경상자를 163명, 생사불명자를 63명으로 기재하였고, 재산 손실 통계에서는 손실업종, 수목(數目), 총액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속(續) 평양 화교 사망 통계”에서는 사망자 남 16명, 여 1명을 포함하여 17명을 추가하였다. 그 근거는 진남포 분관의 7월 31일자 추후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앞서 왕영보 조사단에서 평양 사망자를 109명이라고 했는데, 8월 16일자 장유성의 문건에 의하면 (7월 31일자 진남포 분관의 보고에 따라) 17명을 추가하여 126명으로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장유성은 8월 24일자 외교부에 보낸 문건에서 사상자 수, 손실 조사 통계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¹⁰⁾ 중화상회가 작성한 이 통계표에는 평양과 부근 지방 화교 손실 조사책(각 업종별 손실액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화교 사상 총책(總冊) 및 구체적 명단(인명, 성별,

9)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8월 16일, “朝鮮暴動排華” 17(020-990600-3024), 5-13.

10)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8월 24일, “朝鮮暴動排華” 18(020-990600-3025), 77-120.

연령, 원적, 주소, 傷害 정도 포함)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이 중 사망자 명단 109명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후속 명단 17명을 추가하였는데 작성일자는 7월 31일로 되어있다. 여기까지는 8월 16일자 장유성의 보고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그 뒤에 재차 후속 15명의 명단을 첨가하였다(날짜는 명기하지 않음). 두 번째 후속 명단까지 포함하면 126명에서 15명을 더해 141명이 된다. 141명은 어떤 숫자일까.

세 번째로 9월 7일자 장유성이 외교부에 보낸 문건에 따르면, 사망자 141명은 진남포 분관의 보고에 따라 수정한 통계다. 그런데 재차 조사해보니, 그 가운데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10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사망자 2명을 추가 보고한 것을 가감하면 총수는 133명이 된다.¹¹⁾ 다른 지역과 달리 평양 폭동의 사망자가 많아 통계표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평양 사망자는 133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장유성의 8월 24일자 문건과 9월 7일자 문건에 포함된 각 통계표 맨 뒤에는 작성 책임자 명단과 날인이 첨부되었다. 작성 책임자 명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시조사원: 孟憲時, 張景賢, 王紫宸, 劉子平, 王澤國, 劉笑溪

상회조사원: 孟憲時, 許維敏, 劉聿軒, 姜菊, 劉文治, 劉滙川, 羅正家, 阮孝侯, 王永全, 許丹臣¹²⁾

임시조사원과 상회조사원은 모두 15명으로, 맹헌시는 양쪽 명단에 모두 들어가 있다. 이 중 14명은 앞의〈표 1〉의 명단과 일치하며, 허단신은 제2차 조사단에 동행한 장유성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인물이다.

11)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9월 7일, “朝鮮暴動排華” 18, 121-128.

12)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8월 24일, 민국 20년 9월 7일, “朝鮮暴動排華” 18, 77-120, 121-128.

마지막으로, 장유성은 9월 25일자 외교부에 보낸 문건에서 평양 사망자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조선화교 사상자 수, 손실 조사표를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평양을 포함하여 사망자와 부상자에 관한 최종 통계표, 조선 각지 교포 손실 조사책이 포함되었다.¹³⁾ 이로써 사상자, 중상자 통계와 명단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중 확정된 손실 조사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표 2〉 평양과 그 부근 화교 손실 조사 통계(1931.9)

업종별	손실 수목(엔)	비고(순위)
잡화상	760,119.30	2
면포상	1,018,380.00	1
철주물업	116,840.00	6
요리업	126,105.82	4
농작업	228,114.00	3
工匠業	66,968.00	7
음식업	22,262.30	8
이발업	5,713.00	10
小麥業	124,460.00	5
주택	17,410.00	9
기타 영업	59,516.15	
총계	2,545,888.57	

〈출처〉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9월 25일, “조선 각지 교포 손실 조사 통계”, “朝鮮暴動排華” 17, 18-19.

〈표 2〉에 따르면 가장 큰 손실을 받은 업종은 면포상이고, 다음이 잡화상이다. 이어서 농업, 요리업, 소맥업, 주물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면포상

13)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9월 25일, “朝鮮暴動排華” 17, 14-20;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9월 25일, “民國二十年：僑務—韓民排華暴動案(三)”(03-47-205-13), 113-118.

과 잡화상의 손실액이 전체 손실액의 약 70%로 폭동으로 인한 화교 직물업의 몰락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산동성정부 등에서 보낸 난민 곤, 귀국 화교 조사표를 영사관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1932년 6월 27일 자료(장유성의 후임) 노춘방(盧春芳)은 주일공사관에 화교 사상자 수, 손실 조사 통계표를 보고하였다. 1931년 9월 25일자 장유성의 문건과 비교해 보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 재산손실액은 변함이 없고, 경상자와 실종자수 통계, 폭동 일자와 피난자 수를 명기하였다.¹⁴⁾ 구체적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선화교 사상자수, 손실 조사 통계(1932.6)

폭동 지점	폭동 일자	사망(명)	부상(명)	실종(명)	재산손실액 (日幣, 엔)	피난수(명)
평양	7월 5일 오후 7시	133	중상 74 경상 215	72	2,545,888.57	1,000 5,000 (醫校)
진남포	7월 6일 오후 2시		중상 1 경상 18		117,757.56	800 600
인천	7월 3일 오후 1시	2	중상 2 경상 20		653,752.32	3,600
경성	7월 3-4일 오후 10시		중상 6 경상 140		644,124.59	3,600
부산	7월 8일 오후 9시		중상 2		14,791.41	160
원산	7월 4일 한밤	5	중상 26	19	138,525.40	2,300
신의주	7월 7일	2	중상 9 경상 33		48,263.22	1,200
총계		142	중상 120 경상 426 =546	91	4,163,103.07	18,260

<출처> 주조선총영사 盧春芳→주일공사관, 민국 21년 6월 27일, “民國二十一年: 損失報告—損失調查(二)”(03-47-222-16), 69-70.

14) 주조선총영사 盧春芳→주일공사관, 민국 21년 6월 27일, “民國二十一年: 損失報告—損失調查(二)”(03-47-222-16), 69-70.

이 최종 조사표는 이후 대외 교섭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주지 하듯이 만주사변 발발 이후 남경국민정부는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연맹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중국 대표단은 국제연맹에 중일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조선 각지의 화교 배척 폭동 발생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다(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 박선영 역 2009, 205-211). 이는 앞서 언급한 왕영보의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표 3〉을 원용하였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발표한 일본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는 119명(평양과 그 부근은 112명), 중상 45명, 경상 150명(평양과 그 부근은 중상 33명, 경상 65명)으로(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별지 제1호), 그 차이는 대부분 평양 사상자 통계에서 비롯된다.

IV. 구휼금 지급

앞서 확정된 조사표는 구휼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구휼금 종류는 제공 기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관련 자료가 흩어져있어 파악이 쉽지 않다. 가능한 대로 필자가 파악한 구휼금 종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그룹은 상해시상회(上海市商會), 북평반일회(北平反日會), 산둥성 정부(山東省政府), 흑룡강진연위원회(黑龍江賑捐委員會) 구휼금이다. 관련 내용은 1931년 9월 15일자 경성 중화상회에서 총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⁵⁾ 요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총영사관은 각지 상회를 소집하여 사상자 수에 따른 분배금 액수, 사상자 가족이 귀국했을 경우 분배금 보관 방법 등을 의논하였다. 구휼금

15) 경성중화상회→주조선총영사 張維城, 民國二十年 9월 15일, “民國二十年: 僑務—韓民排華暴動案(三)”(03-47-205-13), 107-109.

분배는 영사관, 당부(黨部), 상회가 협력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사상자가 가장 많은 평양의 경우 평양 당부가 폭동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되었으므로 직속지부에서 1인을 특파하도록 했다.

이어 구휼금 집행을 위해 경성 증화상회는 집(행)감(찰)위원회를 소집하였는데, 총영사관 부영사 계달(季達)이 열석(列席)하였고 인천 증화상회 대표 2명, 국민당 직속지부에서 2명(鄭維芬, 王震如)이 추가로 참석하였다. 상해시상회의 구휼금은 국폐(國幣) 16,000원(6,991.57엔), 북평반일회는 4,000원(1,712.33엔), 산둥성정부는 8,000원(3,465.21엔), 흑룡강진연위원회는 1,420엔이다. 이 회의에서는 구휼금 지급을 위한 몇가지 원칙을 세웠다. 하나, 구휼금 처리에는 영사관, 당부, 상회가 협력한다. 다만, 평양의 경우 폭동으로 당부가 정판되었으므로 직속지부에서 1명을 특파한다. 둘, 구휼금은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제공하고, 가족이 귀국하여 수령이 어려운 경우, 평양 조선은행에 이들 3개 기관의 명의로 예금한다. 셋, 구휼금 총액 중 일부는 인천상회에 보관하여 귀국 교포를 위한 구제비로 활용한다.

다만, 이 9월 15일 자 문건에서 개인별 지급 내역과 영수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제1그룹 4건의 구휼금 분배 내역을 개인당 지급예상액을 포함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배화폭동 이후 구휼금 분배 일람표와 지급 내역(제1그룹)

구휼금 종류 (제공 기관)	구휼금 액수(엔)	개인당 지급예상액(엔)	개인별 지급 내역
上海市商會	6,991.57 (國幣 16,000원)	사망: 28 중상: 12	확인되지 않음
北平反日會	1,712.33 (國幣 4,000원)	사망: 7 중상: 3	상동
山東省政府	3,465.21 (國幣 8,000원)	사망: 12 중상: 5	상동

구휼금 종류 (제공 기관)	구휼금 액수(엔)	개인당 지급예상액(엔)	개인별 지급 내역
黑龍江賑捐委員會	1,420	사망: 4 중상: 2	상동
총액	13,589.11	사망: 51 중상: 22	

〈출처〉 경성중화상회→주조선총영사 張維城, 민국 20년 9월 15일, “民國二十年: 僑務—韓民排華暴動案(三)”(03-47-205-13), 107-109.

제2그룹은 외교부, 진무위원회(賑務委員會), 요녕(遼寧) 각 법단(法團), 장주석(蔣主席, 蔣介石) 구휼금이다. 이들 4건의 구휼금은 앞의 제1그룹과 달리 개인별 지급 내역, 영수증이 남아있다. 이 중 먼저 외교부, 진무위원회, 요녕 각 법단 등 3건의 구휼금 지급 실태를 검토해 보겠다.

외교부의 구휼금은 50,000원(21,767.22엔)이고 진무위원회는 5,000원(2,234엔), 요녕 각 법단은 11,000엔이다.¹⁶⁾ 이 3건의 구휼금 배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폭동 이후 진남포 관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영사 양우(楊佑)의 다음 2건의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양우가 1932년 2월 5일자로 총영사관에 보낸 문건에 따르면, 구휼금 분배는 이전에 진남포 관무를 대리했던 주사 이록의(李綠漪)가 경성 지부 상무위원 정유분과 회동해서, 중화상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였다. 영수증에는 상회, 당부, 영사관에서 도장을 찍어 증명하고, 재차 수령자가 확인 도장을 찍었다. 또한 사상자 가족 다수가 귀국하여 수 일간 구휼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영사관, 당부, 상회 명의로 평양은행에 예치한 후 상회가 책임 지고 발급하기로 하였다. 이 3건의 구휼금에 대한 사망자 100명분 영수증

16) 주조선총영사 張維城→외교부, 민국 20년 9월 11일, “朝鮮暴動排華” 32(020-990600-3039), 43-45; 遼寧 대표→주조선총영사관, 민국 20년 8월 20일 到, “民國二十年: 僑務—韓民排華暴動案(一)”(03-47-205-11), 119-122.

300장, 중상자 36명분 영수증 108장을 모두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¹⁷⁾ 양우의 보고 시점인 1932년 2월까지 사망자 100명(원 사망자 133명), 중상자 36명(원 중상자 74명)에게 이 3건의 구휼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우는 1932년 10월 15일자 총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중화상회의 보고에 근거해 추가로 중상자 3명, 사망자 3명에게 구제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리고 영수증을 부건으로 첨부하였다.¹⁸⁾ 그 중, 사망자 이윤화(李潤和)의 영수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 李潤和의 姉丈이 수령함

遼寧 各 法團 사망구제금 計 일금 40엔

領款人: 隋雲泰(도장 날인)

증명인: 黨部/ 領事館/ 中華商會(각각 도장 날인)

민국 21년 9월 28일¹⁹⁾

이에 따르면, 사망자는 이윤화이고 요녕 각 법단의 사망 구제금 40엔 수령자는 누이의 남편(‘姉丈’)이지만, 1932년 9월 28일자로 수운태(隋雲泰)가 대리 수령하고 당부, 영사관, 중화상회가 이를 증명하였다. 다만, 이 영수증에서는 원 수령자의 성명, 대리 수령자 수운태와 사망자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원 수령자는 사망자 이윤화의 ‘누이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는 오류이다(후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수운태에게 진무위

17) 分駐鎮南浦副領事 楊佑→주조선총영사관, 民國二十一年 2월 5일, “民國二十一年: 僑務一賑款分配救濟案”(03-47-218-15), 38-39.

18) 부영사 楊佑→주경성총영사관, 民國二十一年 10월 15일, “民國二十一年: 僑務一賑款分配救濟案”, 55-56.

19) 부영사 楊佑→주경성총영사관, 民國二十一年 10월 15일, “民國二十一年: 僑務一賑款分配救濟案”, 57-58.

원회 구제금 9엔, 외교부 구제금 70엔이 지급되었다.²⁰⁾ 이상 제2그룹 중 3건의 구휼금은 1932년 9월까지 사망자 103명, 중상자 39명에게 분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그룹으로 분류한 장주석 구휼금 지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장개석 주석은 1931년 10월 16일자 훈령에서 사상 교포에게 구휼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망자에게는 50엔, 중상자에게는 20엔이 배분되었다. 구휼금 총액은 1만 엔이었다.²¹⁾ 진남포 분관은 (1932년 10월 23일자) 제1비(批)부터 제8비까지 구휼금 발급 일자, 내역, 지급 총액, 지급 인원, 영수증 송부 일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총영사관에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장주석 구휼금은 1931년 11월부터 193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망자 96명에게 지급되었다.²²⁾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

양우가 총영사관에 보낸 1931년 12월 30일자 문건에는, 평양과 부근 지방 사망 화교와 유족이 영수한 제1비에서 제4비까지 구휼금 명부가 첨부되었다. 여기에는 제1비, 제2비 사망자 59명, 제3비, 제4비 사망자 26명의 성명, 성별, 구휼금 지급 기관(장주석), 지급액(50엔), 유족명, 거주 지역(평양부), 영수 일자 등이 기재되었고, 감시인과 담당자란에 도장이 날인되었다.²³⁾ 다만, 제5비부터 제7비까지의 사망자 10명에 대한 구휼금 명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 부영사 楊佑→주경성총영사관, 민국 21년 10월 15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賑款分配救濟案”, 59-60.

21) 주조선총영사관→주진남포분관, 민국 21년 10월 26일, 민국 21년 8월 22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03-47-218-16), 40, 49-50.

22) 兼代駐鎮南浦分館館務主事 顏肇省→주조선총영사 盧春芳, 민국 21년 10월 23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57-59.

23) 분주진남포부영사 楊佑→주조선총영사 盧春芳, 민국 20년 12월 30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3-10.

그런데 총영사관은 이 구휼금 명부에서 확인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에 1932년 2월 2일 자로 훈령을 내려 사상자의 조선 내 거주 지역 및 원적의 상세 주소지와 수령자 명단을 정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²⁴⁾ 이미 1931년 12월까지 제1비부터 제7비까지 95명에게는 구휼금이 지급된 상태였다. 이에 양우는 제8비 사망자 1명(郭安長)의 상세 조사표 내역서를 첨부하였다.²⁵⁾ 이후 총영사관은 구휼금 지급을 명하였고, 양우는 구휼금 지급과 영수증 발급 건을 다시 보고하였다.²⁶⁾ 이상에서 제1비부터 제7비까지 95명은 1931년 12월까지, 제8비 1명은 그 다음 해 2월까지 구휼금이 배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이윤화 등 사망자 3명에게 제2그룹 3건의 구휼금이 1932년 9월 추가로 지급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총영사관은 1932년 10월 27일자로 진남포 분관에 지령을 내려 이윤화 등 3명 사망자의 현주소, 나이 등이 기존의 조사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²⁷⁾ 장주석 구휼금 지급 과정에서 조사표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양우의 후임으로 진남포분관을 책임진 주사 안조성(顏肇省)은 11월 14일자 총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이들 사망자 3명의 수정 조사표를 첨부하였다.²⁸⁾ 이 중 사망자 이윤화의 조사표를 조금 길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4) 주조선총영사관→진남포 분관, 훈령, 민국 21년 2월 2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11.

25) 분주진남포부영사 楊佑→주조선총영사 盧春芳, 민국 21년 2월 2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116-117.

26) 분주진남포부영사 楊佑→주조선총영사 盧春芳, 민국 21년 2월 4일, 민국 21년 3월 31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118, 119-120.

27) 주조선총영사관→진남포분관, 민국 21년 10월 27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60-61.

28) 검대주진남포분관관무주사 顏肇省→주경성총영사 盧春芳, 민국 21년 11월 14일,

(가) 山東省 榮成縣 第5區 民治鄉 于家莊村
李和澤의 胞弟 李雲和는 民國 20년 朝鮮에서 慘死됨.
조사해보니 구휼금이 朝鮮 화교상회에서 지급되었다고 함.
나는 병으로 인하여 수령할 수 없어 隋雲泰가 朝鮮에서 대신 수령할
것이니 商會 선생은 이에 따라 처리해주시길 바람.
수령인 隋雲泰
民國 21년 7월 19일
(영성현 제5구 民治鄉公所 직인)

(나) 보고 증명서
七五 慘死 李雲和 1명
朝鮮 大同郡 柴足面 長水院에서 사망함.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石匠으로 일함. 어떤 字號였는지는 알지 못함.
본적은 山東省 榮成縣 第5區 民治鄉 于家莊村
나이 37세 10월 18일 丑時生
보고자 宋玉春
산동성 榮成縣 第5區 民治鄉公所(직인)

(다) 평양 중화상회 證字 8號
李潤和는 七五 慘案으로 사망함. 수령인은 사망자의 內弟임. 이는 거짓
이 없음. 이에 증명하여 폐해를 막고자 함. 총영사관은 이를 증명해주시기 바람.
평양 중화상회
民國 21년 10월 21일

(라) 현재 朝鮮의 死傷 교포 가족 조사표와 보증서
성명: 李潤和, 성별: 남, 나이: 37세
관직: 山東 榮成縣. 본적 주소: 본 縣(榮成縣) 第5區 民治鄉 于家莊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61-62.

직업: 농업. 사망자와의 관계: 처의 親弟

현주소: 평양부 신창리 43번지

기타: 증명서 1장을 추가하여 구휼금 수령인의 영구 주소는 山東 榮成縣 民治鄉 于家莊임을 증명함.

민국 21년 10월 21일 보고인 隋雲泰(도장 날인)

李潤和는 이번 폭동으로 사망함. 사망자 본인의 內弟가 장주석의 구휼금을 수령함. 이후 만일 위법행위가 있으면 본 보증인은 법률상 성립되는 해당자의 죄를 부담하고 수령한 구휼금을 배상함. 이에 보증서를 갖추어 총영사관에 삼가 제출함.

현주소: 평양부 신창리 43

보증인: 東昇樓(도장 날인)

영구 주소: 山東 榮成縣 5區 民治鄉 于家莊

수령인 보고자: 隋雲泰(도장 날인)

민국 21년 10월 21일²⁹⁾

위의 (가)는 사망자 이운화(李雲和라고 되어 있지만 동일 인물로 추정됨)의 유족 이화택(李和澤)이 대리 수령자로 수운태를 지정하였음을 평양 중화상회에 요청하는 서신이고, (나)는 향公所(鄉公所)에서 사망자의 인적 사항을 보고한 증명서이다. (다)는 평양 중화상회에서 작성한 사망자와 수령자 증명서이고, (라)는 이운화 가족 조사표와 대리 수령자 수운태의 보증인 동승루(東昇樓)의 보증서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운화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석공(石工)으로 일하다가 폭동으로 사망하였다. 유족 이화택은 이

29) 검대주진남포분관무주사 顏肇省→주경성총영사 盧春芳, 民國二十一年 11월 14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63-66.

윤화의 형으로(이윤화는 이화택의 胞弟임) 원적지에서 수령이 어렵기에, 평양에 있는 이윤화의 내제(內弟, 처의 동생) 수운태에게 구휼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7월 19일 자로 평양 중화상회에 요청하였다. 중화상회는 이윤화가 폭동 사망자이고, 대리 수령인 수운태가 이윤화의 ‘처의 친제(親弟)’ 곧 내제임을 증명하였다. 수운태는 요리점 동승루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10월 21일 자로 구휼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진남포 분관은 (가)에서 (라)까지 4건의 서류를 11월 14일자로 총영사관에 송부하였다.

이상 4건의 서류에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구휼금 지급 절차에 관한 것이다. 원 수령자의 요청으로 대리 수령자에게 구휼금이 지급되기까지 원 수령자 본인, 원적지 항공소, 평양 중화상회, 진남포 분관(상세 조사표에는 대리 수령자의 확인서, 보증인 보증서 포함) 등이 서류를 작성하였다. 소요 기간은 약 3개월로 진남포 분관은 재차 1개월 뒤 이를 총영사관에 보고하였다. 장주석 구휼금이 1차로 지급된 시점은 1931년 11월인데, 이윤화 유족 이화택은 거의 1년 뒤 1932년 10월에 가서야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윤화에게 추가로 구휼금이 지급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거나 예외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망자의 직업에 관한 것이다. 제1비에서 제7비 사망자 조사표에는 직업이 빠져있다. 그런데 제8비 사망자 1명 궤안장은 상세 조사표 내역서, 추가된 이윤화 등 3명은 수정조사표가 남아있기에 직업을 확인할 수 있다. 궤안장의 직업은 농업이고, 이윤화의 직업은 석공이다. 또한 본문에서는 생략했으나, 다른 사망자 2명은 각각 석공과 목공이다.³⁰⁾ 비록 4건의 사례이긴 하지만 화교 노동자, 농민이 다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휼금 지급 인원에 관한 것이다. 1932년 10월 시점 사망자

30) 검대주진남포분관관무주사 顏肇省→주경성총영사 盧春芳, 민국 21년 11월 14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67-75.

133명 중 제1비에서 제8비까지 96명, 이운화를 포함한 추가 3명 합계 99명에게 구휼금이 배분되었다.

그런데 제2그룹 3건의 구휼금은 사망자뿐 아니라 중상자에게도 지급되었다. 반면 장주석 구휼금이 중상자에게 배분되었다는 개인별 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양우는 1932년 10월 3일자 총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사망자 미지급분 뿐 아니라 중상자 ‘전체’ 미지급분 안건에 대한 조치를 중화상회에 재촉하였다고 보고하였다.³¹⁾ 중화상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2그룹 지급 내역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배화폭동 이후 구휼금 분배 일람표와 지급 내역(제2그룹)

구휼금 종류 (제공 기관)	구휼금 액수(엔)	개인당 지급 예상액(엔)	개인별 지급 내역 (인원수/ 지급일자)
外交部	21,767.22 (國幣 50,000원)	사망: 70 중상: 45	-사망 100명/ 중상 36명 (-1932.2. 지급) -사망 3명/ 중상 3명(1932.9. 지급) =사망 103명/ 중상 39명 지급(최종)
賑撫委員會	2,234 (國幣 5,000원)	사망: 9 중상: 7	상동
遼寧 各 法團	11,000	사망: 40 중상: 25	상동
蔣主席	10,000	사망: 50 중상: 20	-사망 96명 (1931.11-1932.2 지급) -사망 3명(1932.10 지급) =사망 99명 지급(최종)

<비고>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구체적 출처는 본문의 주석을 참고할 것

31) 부영사 楊佑→주조선총영사 盧春芳, 민국 21년 10월 3일,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 47-48.

이상 구휼금 배분 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4>에 따르면, 제1그룹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별 배분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표 5>에 의하면, 제2그룹의 3건은 전체 사망자의 77%(133명 중 103명), 중상자의 53%(74명 중 39명), 장주석 구휼금은 사망자의 74%(99명)가 수령하였다. 반면 장주석 구휼금을 중상자가 받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망자 유족이 귀국했을 경우 구휼금 지급은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였기에,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사망자 이운화의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각지 중화상회는 총영사관 혹은 경성 중화상회의 구휼금 관리 방법 곧, 수속의 번거로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馮國林 2021, 66-72). 이후 남은 구휼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되었다.³²⁾

V. 결론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 평양에서 발생한 배화폭동의 실태를 중국의 사후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평양화교의 보호 책임을 맡고 있는 주조선영사관(진남포 분관), 실무를 담당한 평양 중화상회, 그리고 국민당 주조선 직속지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상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이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1, 2차 조사단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평양 폭동은 1931년 7월 5일과 6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제1차로 총영사 장유성은 7월 8일 주사 이중강을 평양에 파견하여 사건의 대략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위로하였다. 제2차로 외교

32) 주경성총영사 盧春芳→외교부, 민국 23년 3월 20일, “朝鮮暴動排華” 32, 79-84.

부는 주일공사 왕영보에게 실지조사를 명하였다. 왕영보는 7월 1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7월 5일 저녁 7시부터 발생한 폭동은 매우 격렬하고 조직적이었음에도 일경의 제지가 없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둘째, 진남포 분관 수습영사 서원달은 평양의 소식을 듣고 6일 오전 평양역에 도착했으나 형세가 안정되었다는 일본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진남포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돌아왔다. 보고서에서는 서원달의 행보를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평양에서 참극이 발생할 때 영사관원은 부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원달은 사후 처리 과정에서 노고를 인정받고 부영사로 승진하였으나 결국 면직되었다. 셋째, 평양 사상자 통계는 확정되지 않았고 일본 곧, 조선총독부의 공식 통계와도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최종 피해조사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제1차 조사단에는 경성의 국민당 주조선 직속지부 대표가 동행하였다. 국민당 평양 분부는 폭동으로 와해되었기에, 경성의 직속지부에서 특파된 인원이 사후 처리 과정에 협조하였다. 재난 화교 구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평양 중화상회였다. 인적, 물적 피해조사표는 중화상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데, 사망자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구휼금 지급 실태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제1그룹은 상해시상회, 북평반일회, 산동성정부, 흑룡강진연위원회가 제공한 구휼금이다. 제2그룹은 외교부, 진무위원회, 요녕 각 법단, 장주석이 제공한 구휼금으로, 제1그룹과 달리 개인별 지급 내역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구휼금은 사망자와 중상자에게 배분되었는데, 영수증에는 상회, 직속지부가 도장을 찍어 증명하고 수령자가 확인 도장을 찍었다. 외교부, 진무위원회, 요녕 각 법단의 구휼금은 각각 사망자의 77%, 중상자의 53%, 장주석 구휼금은 사망자의 74%가 수령하였다. 장주석 구휼금이 중상자에게 배분되지 못한 연유는 중화상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유족이 귀국했을 경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구휼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에, 본문에서 소개한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미지급 구휼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되었다.

투고일: 2024.11.01. 심사완료일: 2024.12.02. 게재확정일: 2024.12.09.

| 참고문헌 |

1. 자료

“朝鮮暴動排華”, 臺灣 國史館 소장

(<https://www.drn.gov.tw>)

-“朝鮮暴動排華” 3(020-990600-3010)

-“朝鮮暴動排華” 5(020-990600-3012)

-“朝鮮暴動排華” 10(020-990600-3017)

-“朝鮮暴動排華” 17(020-990600-3024)

-“朝鮮暴動排華” 18(020-990600-3025)

-“朝鮮暴動排華” 32(020-990600-3039)

“駐朝鮮使館檔”,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https://archives.sinica.edu.tw>)

-“民國十八年: 商務—商會職員改善”(03-47-178-03)

-“民國二十年: 僑務—韓民排華暴動案(一)”(03-47-205-11)

-“民國二十年: 僑務—韓民排華暴動案(三)”(03-47-205-13)

-“民國二十年: 人事—鎮南浦分館人事”(03-47-207-10)

-“民國二十一年: 僑務—賑款分配救濟案”(03-47-218-15)

-“民國二十一年: 僑務—蔣主席慰卹金案”(03-47-218-16)

-“民國二十一年: 損失報告—損失調查(二)”(03-47-222-16)

朝鮮總督府 外事課 문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소장

(<https://www.archives.go.kr>)

-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鮮內ニ於ケル支那人排斥事件ノ概況”, “國聯支那調査委員關係書類”(CJA0002328).

-“在京城中華民國副領事季達及在鎮南浦中華民國修習領事徐源達ノ榮進ニ關スル件”(1931.7), “各國領事館往復—中華民國領事館”(CJA0002323).

-“副領事引揚ニ關スル件”(1931.9), “各國領事館往復—中華民國領事館”(CJA0002323).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史料編纂委員會 編. 1964, *革命文獻* 33,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遼寧省檔案館·吉林省檔案館·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合編. 1991, *萬寶山事* 件,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 박선영 역. 2009, *중일 문제의 진상—국제연맹 조사단에 참여한 중국 대표가 제출한 29가지 진술(1932년 4월8월)*, 동북아역사재단.

2. 연구논저

강진아. 2012, “만주사변 전후 조선 화교문제의 양상—朝鮮總督府 外事課와 在韓中國領事館 간 왕복문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0, 동양사학회.

강진아. 2021, “영국 외교문서로 재구성한 1931년 만보산 사건과 조선 반중(反中) 폭동”, *동양사학연구* 156, 동양사학회.

박홍우. 2017, “1931년 화교 배척 사건과 평양 화교사회”,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손승희. 2007, “지역 너머의 만보산 사건(1931)—사건을 둘러싼 실제적 외교 행위 규명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3,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이은상. 2016a, “20세기 전반(1912-1936) 식민지 조선의 신의주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70, 중국근현대사학회.

이은상. 2016b, “원산화교와 배화폭동”, *중국근현대사연구* 72, 중국근현대사학회.

이은상. 2022, “식민지 조선 평양화교의 실태—배화폭동 이전을 중심으로”, *동양학* 87,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은상. 2023, “조선 북부 개항도시 진남포의 중국영사관 조직과 그 위상”, *중국사연구* 145, 중국사학회.

이은상. 2024, “1910-1930년대 식민지 조선 북부 개항장 진남포화교의 실태”, *비교중국연구* 5-1, 인천대 중국학술원.

이정희·송승석. 201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방.

- 임준규. 2018, “1931년 식민지 조선에서의 반(反)중국인 폭동의 동학”,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장세윤. 2003, “만보산 사건 전후 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구* 2-1, 인천대 인천학연구소.
- 정병욱. 2019, “1931년 식민지 조선 반(反)중국인 폭동의 학살 현장 검토”, *사충* 97, 고려대 역사연구소.
- 李正熙. 2010, “近代朝鮮華僑の社会組織に関する研究”, *京都創成大學紀要* 10, 京都創成大學.
- 李正熙. 2012, “1931年排華事件の近因と遠因”,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菊池一隆. 2007, “萬寶山朝鮮事件の實態と構造—日本植民地下, 朝鮮民衆による華僑虐殺暴動を巡って”, *人間文化* 22, 愛知學院大學人間文化研究所紀要.
- 石建國. 2012, “汪榮寶與國民政府“攘外必先安內”國策の出籠—以1931年“朝鮮排華運動”爲中心”, *當代韓國. 2012年 第1期*,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馮國林. 2021, “1931年朝鮮排華事件與中華商會的因應”, *비교중국연구* 2-1, 인천대 중국학술원.

3. 신문, 잡지

- “단오에 거행된 청천기 계양식—륙십여명 중국인이 平壤城下에 會集하야” (1928년 6월 24일). *중외일보*.
- “中國民당지부 十七週 기념식” (1930년 4월 17일). *중외일보*.
- “평양 재류 중국인 내홍” (1929년 9월 5일). *조선일보*.
- “학교 쟁투로 자못 분규” (1929년 9월 5일). *조선일보*.
- “평양 시내 중국인 상점 6개소 습격” (1931년 7월 6일). *조선일보*.
- “사회단체에 감사, 국민당평양지부장 담화” (1931년 7월 9일). *동아일보*.

